감사규정

개정 2016. 5. 2 제정 1995.05.10 개정 2017. 5.10 개정 1999.10.02 개정 2017.12.28 개정 2003.01.29 개정 2018.10.23 개정 2010.11.03 개정 2018.12.18 (규정명칭 변경) 개정 2019.12.17 개정 2011. 9.14 개정 2020.11.30 개정 2013.12.30 개정 2021.12.28 개정 2014.12.30 개정 2022. 9.29 개정 2015.11.13 개정 2023. 8. 3 [감사기획부 042-600-8283]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 운영 규정」 제46조에 따라 한국가스기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5.10, 2018.10.23>
- 제1조의2(규정 개정) 감사는 대내·외 감사환경의 변화 및 요구사항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정을 통해 감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한다.<신설 2020.11.30>
- 제2조(감사의 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1. 업무와 회계의 감사 <개정 1999.10.2>
 - 2. 관계법령,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감사
 - 3. 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개정 1999.10.2>
 - 4. 근무기강 및 민원사항 등에 관한 감사 <개정 1999.10.2.>
 - 5. 청렴옴부즈맨이 요청하는 감사. 단 부패행위와 부패취약 분야에 한함 <신설 2021.12.28>
- **제3조(감사의 종류)**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및 IT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1999.10.2, 2010.11.3, 2016.5.2, 2022.9.29 >
 - ② 종합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하여 예산의 운용실태,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평가 등 업무전반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감사 대상부서와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9.10.2, 2010.11.3>
 - ③ 특정감사는 제2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개정 2010.11.3>
 - ④ 일상감사는 회사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범위의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 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개정 1999.10.2>
 - ⑤ 복무감사는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및 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0.11.3>

- ⑥ 재무감사는 예산의 활용·관리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한다.<신설 2016.5.2>
- ⑦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신설 2016.5.2.>
- ⑧ 사전컨설팅감사는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요 사업 및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의 타당성,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점검·검증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는 활동을 실시한다. <신설 2022.9.29 .>
- ⑨ IT감사는 정보기술 부문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한다.<신설 2022.9.29.>
- 제3조의2(출자회사 감사) 감사는 출자회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제3조의3(사전컨설팅감사) ① (삭 제) <2022.9.29>
 - ② (삭 제) <2022.9.29>
- 제3조의4(감사경영권고) ① 감사는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 또는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소관부 서에 상임감사 경영권고 조치요구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제도개선 및 대책 강구 등 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9.29.>
 - ② 제1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부서는 통보를 받은날로부터 20일이내에 조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내에 조치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신설 2022.9.29.>
- **제4조(감사의 방법)** 감사는 서면감사 또는 실지감사(대면 또는 비대면)에 의하여 실시한다. <개 정 2022.9.29. >

제 2 장 감사와 감사실

- **제5조(이사회 등에의 참석)** 감사는 이사회 및 공사가 운영하는 주요 경영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1999.10.2, 2019.12.17.>
- **제6조(감사의 독립성)** ① 감사는 공사의 의결기관 및 집행기관과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2017.5.10>
 - ② 감사부서(이하 "감사실"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은 독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7.5.10, 2018.10.23, 2020.11.30>
 - 1. 집행부서로부터 분리된 별도의 조직으로 설치
 - 2. 감사결과를 감사에게 자유로이 보고
 - 3.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인원 및 예산
 - 4. 공정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감사담당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의 신분 보장 등 인사상 우대방안
 - 5. 경영성과협약 및 성과평가 대상에서 제외<신설 2020.11.30>
 - ③ 감사는 감사실장으로 하여금 인사위원회 등 주요회의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감사실

직원의 인사사항과 관련된 인사위원회에는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7.12.28>

- ④ (삭 제) <2020.11.30>
- ⑤ (삭 제) <2020.11.30>
- ⑥ 감사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외부로부터 독립성 저해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7.12.28, 개정 2020.11.30>
- 1. 감사범위, 감사절차와 방법, 감사시기와 기간, 감사증거수집, 감사결과처리 등을 제한하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 2. 감사인의 업무분장과 임명·승진·전보·보수 등 인사조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외부의 청탁·압력·유혹이나 간섭
- 3. 기타 감사인의 업무수행능력을 제약할 수 있는 인력·예산·정보 등 감사자원에 관한 외부의 부당한 간여
- 제6조의2(감사의 객관성) ① 감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적인 독립성 저해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신설 2020.11.30>
 - 1. 감사인이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감사인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 3. 감사인이 감사 수행일 전 최근 2년 이내에 감사대상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4.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제5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할 때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실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감사실장은 해당 감사인의 감사업무 배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
- 제6조의3(이해충돌방지) 감사인은 사적이해관계자가 감사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적이해관계자의 정의는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3조, 그리고 신고 및 회피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 제4조에 의한다. <신설 2022.9.29.>
- **제7조(감사기구)** ① 감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감사실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9.10.2, 2010.11.3, 2016.5.2>
 - ② 감사실에는 공사의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과 인원 및 예산 등 감사자원을 확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필요한 감사자원을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단, 사장은 감사의 요구 사항에 대해 이견이 있을 시 그 사유를 밝히고 감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2010.11.3, 2017.5.10, 2018.10.23>
 - ③ 감사실은 적정 예산의 심의 및 편성을 위하여 예산편성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며, 예산편성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예산관리부서("예산부문관리부서"를 포함한다)는 감사실에서 제출한 감사활동예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전 사전협의하여야 하며, 임의적으로 삭감할 수 없다.<신설 2011.9.14, 개정 2018.10.23., 2023.8.3.>
 - ④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위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장소, 기록 및 정보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12.30, 2017.5.10>
- ⑤ 감사실과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7.5.10>
- **제8조(감사실 직원의 자격)** ① 감사실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2017.5.10, 2019.12.17>
 - 1.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 2. 기타 감사가 감사실 직원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보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11.3, 2016.5.2>
 -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비위행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자는 기간 경과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9.29.>
 - 가. 금품·향응수수
 - 나. 공금횡령·유용
 -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 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 마.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 사. 채용비위
 -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3. 수습 또는 조건부 임용중인 자
 -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하는 자
 - ③ (삭 제) <2019.12.17>
- 제9조(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전보) ① 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하며 타 부서에 우선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요청대로 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2010.11.3, 2011.9.14, 2017.5.10>
 - ② 감사실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9.10.2, 2010.11.3, 2011.9.14, 2017.5.10, 2019.12.17>
 - ③ 감사전문직위제는 공사의 직무관리 관련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10.23>
 - ④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상 감사실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9.12.17>
 - 1. 감사실 직원으로서 업무수행 중 제11조에 따른 행동규범 등을 위반하여 감사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 2. 승진 및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 3. 감사의 의견이 있는 경우
 - ⑤ 감사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순환보직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12.17.>
 - ⑥ 감사는 감사실 직원의 선발을 위하여 사내공모 또는 적합자를 지정하여 요청한다.<신설 2019.12.17, 개정 2020.11.30>

- ⑦ 감사는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하여 예비감사인 및 감사인 선발인력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12.17, 2022.9.29. >
- **제10조(감사인의 의무)** ① 감사 및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2018.10.23>
 - 1. 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 2. 감사인은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3. 감사인은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 감사인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 ② (삭 제) <2017.12.28>
 - ③ (삭 제) <2017.12.28>
 - ④ 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를 숙지하고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의 습득 및 이론의 연구와 감사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9.14>
 - ⑤ 감사인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실지감사 중 직무와 이해 관계가 있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적접촉을 해서는 아니된다.<신설 2017.5.10>
- 제10조의2(감사인의 전문성) ① 감사는 감사인의 자질과 감사기술 향상을 위하여 감사전략 기반의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개정 2020.11.30>
 - ② 감사인는 매년 56시간 이상의 감사직무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하여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감사역량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3.12.30, 개정 2017.5.10, 2019.12.17, 2020.11.30>
 - ③ 감사는 새로 임용된 감사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자체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감사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
 - ④ 감사는 예비감사인에 대하여 자체 또는 외부 위탁을 통해 감사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감사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9.19. >
- 제10조의3(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 등) ① 감사는 효율적인 감사제도의 운영과 감사의 성과제고를 위하여 자체감사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한다.<신설 2018.10.23>
 - ② 감사는 감사활동 추진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32조 제2항에 따라 감사원에서 수립하는 감사활동 개선 종합대책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3>
- **제11조(감사인의 행동규범)** ①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2015.11.13, 2019.12.17>
 - 1. 독립된 자세로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 2.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며, 「임직원 행동강령」 및 「감사인 행동강령」을 솔선수범하여 실천한다.
 - 4. 감사대상자의 인권존중과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0.11.30>
 -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는다.
 - ② 감사활동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과 절차 등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11.13. >

- ③ 감사실 직원으로 근무 중에 제8조 제2항 제1호의 각 목의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 양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9.>
- ④ 감사는 재직 중에 비위(제8조 제2항 제1호 각 목을 포함) 등이 적발된 감사인을 즉시 타부서로 전보 조치할 것을 사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9.>
- 제12조(이사회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 제13조(주주총회 보고의무)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 제14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개정 1999.10.2>
 - ② 감사는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경우에는 회사를 위하여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10.2>
 - ③ 감사와 감사인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7.5.10>
 - 1. 제 장부, 증빙서, 물품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
 -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요구
 - 3. 창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 4.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 자료의 징구
 - 5.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개정 2010.11.3>
 - 6. 기타 감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④ 제3항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0.11.3> ⑤ (삭 제) <2019.12.17>
- 제14조의2(감사저항에 대한 조치) ① 감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12.17>
 - 1. 감사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태만히 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2. 감사사항 확인을 위한 출석 요구 또는 답변을 거부한 경우
 - 3. 허위진술을 한 경우 <개정 2020.11.30>
 - 4. 감사인에 대하여 폭언 및 협박을 한 경우 <신설 2020.11.30>
 - 5. 확인서, 문답서, 질문서의 작성을 거부 및 방해하거나 해태한 경우 <신설 2020.11.30>
 - 6. 지위 또는 직책 등을 이용하여 감사인 또는 감사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신설 2020.11.30>
 - 7. 감사 처분요구 수위에 대해 압력이나 청탁을 하는 경우 <신설 2020.11.30>
 - 8. 감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정당한 조치요구를 거부 또는 태만히 한 경우 <개정 2020.11.30>
 - ② 제1항 각 호의 해당사항이 발생한 경우 감사인은 즉시 계통보고하여야 하며, 관련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를 가중하여 처분요구 할 수 있다. <신설 2019.12.17, 개정 2020.11.30>

③ 제1항 제8호의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요구에 앞서 업무배제 및 업무분리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장은 이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7, 개정 2020.11.30>

제 3 장 감사계획과 시행

- 제15조(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리스크기반의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확정된 연간감사계획은 지체없이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2010.11.3, 2017.5.10, 2018.10.23 >
 - ② 특정감사 또는 복무감사는 필요에 따라 계획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장 및 이사회의 별도 요청 또는 감사의 별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9.10.2, 2010.11.3, 2018.10.23, 2019.12.17>
 - ③ 감사는 필요시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감사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10.2, 2019.12.17>
 - ④ 감사는 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 수립시 감사대상 부서가 중복하여 감사를 받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5.11.13.>
 - ⑤ 감사계획 수립, 감사제도 개선 등 감사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감사대상부서와 감사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이하"감사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감사운영협의회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감사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8.10.23>
- 제15조의2(중장기 감사전략의 수립) 감사는 공사의 경영방침 및 감사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감사미션·감사비전·전략방향 등이 포함된 중장기 감사전략을 수립하여야 하며, 감사환경의 변화 등으로 감사전략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3>
- 제16조(감사의 사전예고)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부서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0.11.3, 2017.5.10>
- 제16조의2(징계사유의 시효정지) ① 감사는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사장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5.10>
 -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사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신설 2017.5.10>
 - ③ 제2항에 따라 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징계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시효의 남은 기간이 1개월에 못 미치게 될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에 따른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처분 요구나 조치 사항을 통보받은 날(제22조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7.5.10., 개정 2023.8.3.>
- 제17조(감사의 기준) 감사는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2010.11.3>
 - 1. 합법성 및 합리성

-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 제17조의2(감사준거) 감사와 감사인은 다음 각 호에 준거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준거하여야 할 명백한 규정이 없거나 해석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경영목적에 근거하여 공정·타당하게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12.17>
 - 1. 관계법령
 - 2. 공사의 규정(지침, 기준, ISO 품질문서 등 포함)
 - 3. 정부 지시 및 지침 등
- 제18조(감사인의 중표) ① 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감사인 증표를 소지하고 요구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
 - ② 감사는 신임감사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한다.<개정 1999.10.2., 2022.9.29.>
- **제18조의2(감사조서)** ① 감사인은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시스템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신설2017.5.10, 개정 2019.12.17., 2021.12.28>
 - ② 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 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한다.<신설, 2019.12.17>
- 제19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 ①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개선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조치기준에 의하여 처분요구한다.<개정 2011.9.14, 2013.12.30, 2015.11.13, 2017.5.10, 2017.12.28, 2019.12.17>
 - 1. (삭 제) <2019.12.17>
 - 2. (삭 제) <2019.12.17>
 - 3. (삭 제) <2019.12.17>
 - 4. (삭 제) <2019.12.17>
 - ② 제1항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의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 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7>
 - ③ 감사는 성관련(성희롱 및 성폭력 등) 비위, 갑질 및 직장내 괴롭힘 위반,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의 횡령·유용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현 소속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장에게 전보 등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9.12.17>
- 제19조의2(감사결과의 심의) ①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처분요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실에 감사결과심의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6.5.2, 개정 2020.11.30>
 - ② 감사결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신설 2016.5.2, 개정 2020.11.30>
- 제20조(조치결과 통보) ① 사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조치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2010.11.3,

- 2014.12.30. 2017.5.10>
- ② 감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그 조치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사장에게 재요구 할 수 있다.<개정 1999.10.2, 2017.5.10>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이 재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의 재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사장은 재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감사에게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0.2., 2017.5.10., 2023.8.3.>
- ④ 사장이 제3항 규정에 의한 재심사를 요구하지 않으면서 1개월을 초과하여 재요구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재심사 요구 사유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는 이사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5.10., 2023.8.3.>
- **제21조(조치결과 확인)** ① 감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를 차기 감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 2010.11.3, 2011.9.14>
 - ② 감사는 감사결과별로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치여부 및 조치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부서에 대하여는 재 감사 또는 가중 처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11.9.14.. 2013.12.30>
- 제22조(재심의 청구) ① 사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0.2, 2010.11.3., 2017.5.10, 2023.8.3.>
 - 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2019.12.17, 2023.8.3.>
- **제22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① 감사는 직원이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처리 할 수 있다.<신설 2015.11.13. 개정 2022.9.29.>
 - ② 제1항의 면책에 대한 적용대상, 요건,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적극행정 면책 등 감사소명제도 운영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11.13, 2022.9.29 >

제 4 장 보 고

- **제23조(감사결과의 사후관리)** ① 감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조치가 완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개정 1999.10.2, 2010.11.3, 2017.5.10>
 - ② 감사는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 내용을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일상감사일지의 서식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개정 1999.10.2., 2022.9.29.>
 - ③ 개별감사 및 연간감사 결과보고서는 공시 및 통합공시하고, 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4.12.30, 2017.5.10>
- 제23조의2(이사회 및 정부 등 보고) ①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0>

- 1.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부장관을 거쳐야 한다.
- 2. 주무부장관 등 대외기관의 요청에 의한 특정감사 결과는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감사요청기관, 이사회,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의 필요에 의해 실시한 감사결과가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3.>
- 3. 감사결과 공사의 위법한 업무처리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감사보고와 중복되거나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감사 종료시점은 감사결과가 통보된 날로 하되,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감사가 그 조치를 결정한 시점으로 한다. <신설 2017.5.10., 개정 2023.8.3.>
- ③ 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연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5.10>
- 제23조의3(대외보고서의 사전검토) 관계법령 및 규정에 의하여 대외기관에 제출하는 주요 재무보고는 감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7.5.10>
- **제24조(사고보고)**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지체 없이 주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10.2. 2019.12.17>
 - 1. 형사책임에 관련된 사고 <개정 1999.10.2>
 - 2. 500만 원 이상의 변상책임에 해당하는 사고 <개정 1999.10.2. 2019.12.17>
 - 3. 500만 원 이상의 현금·유가증권·기타의 망실 또는 훼손 <신설 2014.12.30. 2019.12.17>
 - 4. (삭 제) <2019.12.17>
 - 5. (삭 제) <2019.12.17>
 - 6. (삭 제) <2019.12.17>
 - 7. 감봉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사고 <신설 2019.12.17>
 - 8. 기타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위법부당사항 <개정 2019.12.17>
- 제24조2(방만경영 예방과 경영지침 준수여부 점검) ① 감사는 방만경영 예방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준수를 위한 효과적인 감사활동 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0, 개정 2020.11.30>
 - ② 감사는 공사의 경영지침 위반사항을 발견하는 경우에 그 위반사항과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주무부장관 및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7.5.10, 개정 2020.11.30>

제 5 장 보 칙

제25조(외부감사) 공사에서 받는 외부감사 중 제2조에서 규정한 감사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감사는

감사가 총괄한다.<개정 2021.12.28>

- 제25조의2(정부문서 접수통보)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에 따른 경영지침 및 이에 준하는 지침성 정부공문 접수시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감사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0.>
- 제25조의3(문서의 명의) 감사실에서 생산하는 문서는 감사명의로 하며,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신설 2021.12.28>
- **제26조(감사인의 대우)** ① 감사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수당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9.14, 2017.5.10, 2018.10.23>
 - ② 감사실 직원에 대하여는 근무평정기준 별도 운영,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9, 2010.11.3, 2011.9.14, 2017.5.10, 2020.11.30>
 - ③ 감사실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 하여야 한다.<개정 2003.1.29, 2010.11.3, 2011.9.14, 2017.5.10>
 - ④ (삭 제) <2022.9.29>
 - ⑤ 감사업무 수행과정에서 감사인에게 형사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변호사 조력 및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8.12.18 >
 - ⑥ 감사인의 지속적인 성과향상 촉진 및 동기부여 등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우수감사인을 심사·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0.11.30>
- 제26조의2(준 감사인) ① 감사는 감사인력 육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타 부서 소속 직원 중에서 준(準) 감사인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7>
 - ② 준감사인의 자격, 역할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9.12.17>
- 제27조(내·외부 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내·외부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6.5.2>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내·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11.3.>
- 제27조의2(타 기관과의 협조) ① 감사는 필요한 경우 타 기관 감사기구의 장에게 감사인력의 지원 및 합동·교차감사 참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18.10.23>
 - ② 감사는 타 기관 감사기구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8.10.23>
- 제28조(시행세칙 제정) 감사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감사규정시행세칙으로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1999.10.2, 2010.11.3>
- 제29조(타 규정과의 관계) 감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 제35조(감사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감사는 감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감사시스템을 구축 하여 운영한다.<신설 2021.12.28>
 - ② 감사인은 감사시스템을 활용하여 감사업무를 수행 처리 및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이	규정은	1995년	5월 1	0일부터 /	시행한다.	Ť	식						
이	규정은	1999년	10월	2일부터 /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1	(시행일	!) 이 규	정은 2	2003년 1월	월 29일부1	•	•						
2	(경과 <i>조</i> 적용한		9조의:	2(감사인의	l 대우)와	관련,	본 규정	개정 경	선 재직	직원은	개정된	본구	구정을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11월	3일부터 /	시행한다.	'	7						
						부	칙						
া	규정은	2011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	규정은	201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 감사시스템 운용은 감사시스템 가동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8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종 류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내 용					
변상명령		-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공사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행위와 결과 간에 인과관계가 있고 변상책임 소멸사유가 없는 사항					
징계		징계 -		직무와 관련된 사항 또는 행동강령 위반사항으로 법령규정이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사항					
시정	금액	_	추징, 환수(환급) 감액, 예산절감	 ○ 추징: 받아들여야 할 금원을 간과한 경우로서 소급하여 재차 청구할 필요가 있는 사항 ○ 환수(환급): 부당·과다하게 지급한 금원을 되돌려 받거나, 부당·과다하게 받은 금원을 되돌려 줄 필요가 있는 사항 ○ 감액: 공사 설계업무에 있어서 설계금액 등이 과다 계상되어 감액이 필요한 사항 ○ 예산절감: 수량 및 단가 조정, 절차 변경 등을 통한 예산절감이 필요한 사항 	2개월				
	기타	_	-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함으로써 교정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사항	2개월				
	경고	경고	-	중요한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지만 그 정상이 참작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 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개월				
	주의	주의	_	위법·부당행위로 인정되지만 경미한 사항	2개월				
주의	부서 경고	_	_	경고사항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귀책사유 보다는 부서 차원의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사항	2개월				
	부서 주의	_	-	주의사항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귀책사유 보다는 부서 차원의 업무처리상의 문제점에 기인한 사항	2개월				
통보	통보	_	-	업무처리 기준, 절차, 내용에 문제점이 있어 개선할 필요성은 있지만 감사인 이 대안제시가 곤란하여 그 개선안을 자체 강구 하거나 자체 시정토록 할 필 요성이 있는 경우	2개월				
	인사 통보	인사 통보	-	징계시효의 완성 등 징계요구를 할 수 없지만 비위가 현저하여 인사조치가 필요한 사항	2개월				
개선		개선		위반사항이 규정·제도·기준·절차 등의 결함, 불합리, 불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 그 원인을 제거하거나 개정, 신설 등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사항	2개월				
권고				업무성과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 적법성을 결할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바람직한 대안 도출을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등 주로 성과감사 측면에서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고발		고발	_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에 해당하는 사항					
현지조치				현지시정, 현지주의, 기타(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사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업무처리 중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_				
모범사례		_	_	예산절감, 업무개선, 성실근무, 민원해소, 기타	_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2.9.29.>

감사경영권고 조치요구

● 담당 감사인: 소속 직위 성명 (042-600-0000)

관리번호	20 -00	조치부서	
권고일자		조치기한	
제 목			
_			
붙임 : 관련자료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2.9.29.>

감사경영권고 조치결과

관리번호	20	20 -00		조치부서 및 담당자	소속 직위 / (042-600-						
권고일자		완료여부		완료일자							
권 고 내 용											
_	_										
조치내용(또는 불채택 이유) 및 향후계획											
_											
붙임 : 관련근거											